

1. 개정이유

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 제정(‘26.3.5.)·시행(‘26.7.1.)예정으로 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

2. 주요내용

- 가. 원자력시설등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거나 이로 인하여 군부대 등에 지원 요청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대상에 통합특별시 추가(안 제6조)
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위협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군부대 등에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알려야 하는 관할 지자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
- 나. 방사선비상 최초보고 대상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(안 별표3)
방사선비상계획 수립시에 관한 세부기준 중 방사선비상 최초보고 대상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총리령 제 호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별표 3 제5호나목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보고)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 회에 보고하고, 관할 <u>특별시장</u> <u>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</u> <u>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알 려야 한다. 1. ~ 3. (생 략)	제6조(보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장 ·</u> <u>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</u> <u>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</u> <u>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